

蔚山廣域市 어린이公園 現況과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中區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崔 宰 榮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12月 日

慶州大學校 大學院

環境造景學科 資源開發 및 環境生態專攻

張 太 熏

張太熏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林元炫 

審査委員 黃正旗 

審査委員 崔宰榮 

1998年 12月 日

慶州大學校 大學院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3. 연구의 진행과정	3
II. 어린이공원의 이론적 고찰	5
1. 어린이공원의 개념과 정의	5
2. 어린이공원의 종류	5
3. 어린이공원 놀이공간의 영역구분 및 필요성	9
4. 공원시설	9
III. 울산광역시 어린이공원 현황	12
1. 어린이공원 현황	12
2.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현황 분석	30
3. 이용자 설문조사	34
IV.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2
1. 어린이공원의 문제점	42
2. 제언 및 개선방안	48
V. 결론	52
참고 문헌	54
부록	56
ABSTRACT	60

표 목 차

<표 1> 어린이 공원 조성현황	13
<표 2>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황	14
<표 3>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조성주체별 현황	31
<표 4> 어린이공원 입지별 현황	48

그 립 목 차

<도 1> 연구의 진행과정도	4
<도 2> 성별 이용자현황	34
<도 3> 연령별 이용자현황	35
<도 4> 직업별 이용자현황	35
<도 5> 공원이용 권역별 이용자현황	35
<도 6> 공원이용 동기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36
<도 7> 공원시설 만족도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36
<도 8> 공원시설 불만족 원인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37
<도 9> 공원시설물 선호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37
<도 10> 공원 이용빈도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37
<도 11> 공원 이용행태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38
<도 12> 화장실 이용빈도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38
<도 13> 화장실 미사용 원인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39
<도 14> 공원 청소횟수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39
<도 15> 공원 불결 원인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39
<도 16> 공원청소 주체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40
<도 17> 공원내 휴지통 제거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40
<도 18> 휴지통 설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41
<도 19> 놀이시설 유지관리에 주민의식 조사현황	41
<도 20> 놀이시설 불만족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41
<도 21> 태화동 울산어린이집	44
<도 22> 다운동 삼성 아파트뒤 어린이공원	46
<도 23> 다운동 시영아파트앞 어린이공원	47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어린이에게 있어서 어린이공원은 놀이의 생활장으로서 신체적 발달과 학습은 물론 사회적인 중심 시설공간으로서 자리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꿈과 건강을 지켜가는 장소이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경제적 풍요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많아졌고, 이 많은 여가시간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의 인권문제와 같은 비중을 가질 정도의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들어 어른들은 후생대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나, 일생을 통해 간직된 유년기 생활의 기쁨과 즐거운 놀이에 관심을 쏟는 투자보다는 아이들의 실내환경문제, 장래소득 등에 관계된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¹⁾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놀이장소로서 매우 중요하며 놀이는 바로 어린이의 지능을 발달시키는 방법으로서 특히 창조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²⁾

한편으로 어린이공원은 도심의 곳곳에 산재해 있고 토지의 효율 또한 상당히 높아 인근 주민의 이용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반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기관이나 단체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³⁾

그러므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놀이 공간으로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되고 또한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도심

1) 신상섭, 주거단지내 어린이놀이터의 조경설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부설 조경계획 연구소, 조경연구 논총 제 2집, 1997. 12, p.10.

2) Richard Datter, Design for Play, London, M.I.T press, 1974, p.25.

3) 신상섭, 전주시 국민학교내 놀이시설 위험인자에 관한 기초연구, 우석대학교 논문집 제15집, 1993, p.212.

의 중요한 녹지공간으로서 인근 주민을 위한 충분한 녹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중 구시가지의 모체이고 새로운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중구를 대상으로 어린이공원이 기존의 놀이 행태가 어린이공원이외의 차도, 보도, 옥상, 공한지 등 다양한 도시생활 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의 체력 단련, 놀이, 모험심, 창의력 등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정교하면서도 풍부한 경험이 제공하는 장소로서 충분히 배려되고 다양성과 독창성 있는 특정적 환경으로 조성하며 주민정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오늘날 급진적인 사회변혁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들어지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들이 과거의 전통적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현 실정이다. 더우기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경제적 풍요와 여가시간의 증대를 가져왔고, 많은 시간을 유치원, 학원 등의 교육 기관과 인근의 어린이 놀이터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 및 앞으로의 놀이 형태를 구성하는 중요한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놀이시설의 부족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증가일로에 있는 청소년 범죄나 젊은 세대들의 공격적 태도와 같은 부차적 이유는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시환경이 갖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어린이 공원의 이용 행태와 도심지내 토지 이용의 적극적 효율성과 관련된 논의가 아직 미약하나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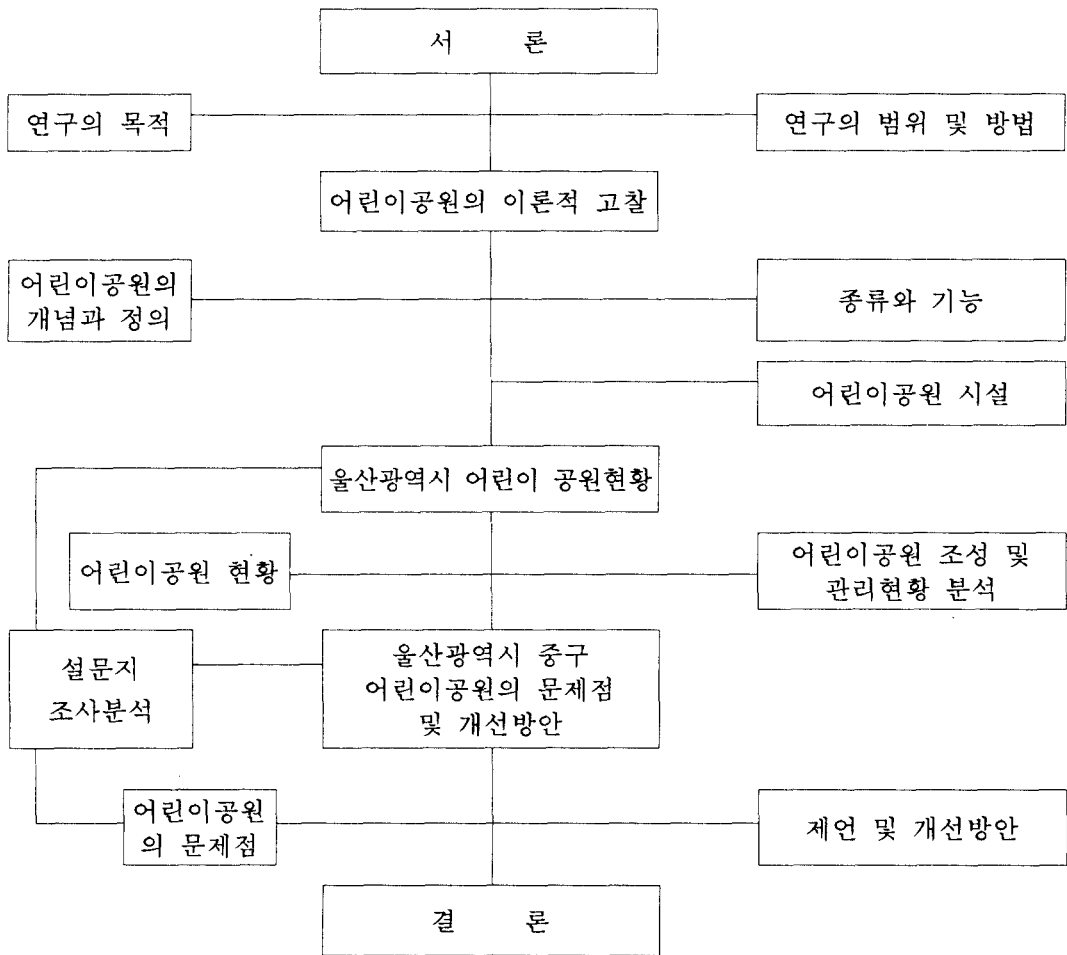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중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방법으로서 먼저 어린이놀이터 조성 현황 및 시설물을 분석하여 공원조성 및 관리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적 틀과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어린이 놀이 시설물 설치의 문제점, 공간이용의 극대화 및 관리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또한 현지 어린이 공원을 답사하여 공원을 찾는 어린이 및 주민을 대상으로 놀이터 조성 및 이용에 따르는 문제점을 울산광역시 중구관내 어린이공원 1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이용객 111명을 설문조사 방법으로 도출하고,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현지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현지 조사시 설문지 조사 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의견도 청취하여 참고자료로 삼았으며, 조사기간은 '98년 7월 1일부터 11월 15일간 이었다.

위에서 실시한 문헌조사, 직접 현지조사, 설문지 조사 및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한 연구분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진행과정

연구의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도 1> 연구의 진행과정도

II. 어린이공원의 이론적 고찰

1. 어린이공원의 개념과 정의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라는 특정한 연령층을 주이용 대상으로 설정한 단일목적의 공원⁴⁾이다. 도시공원법 제 3조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어린이 공원은 도시공원법상 도보로 3~4분에 도달할 수 있는 250m의 이용권역과 1,500㎡의 최소 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네 시이소 등의 유희시설 및 기타 공원 시설이 있으며 이는 어린이의 연령, 기능, 등에 따라 분화되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공원의 최소면적과 공원시설의 지정은 시설 이용의 효용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공원 면적과 시설의 획일화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독자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제시되고 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놀이행위를 조직적으로 구성한 놀이공간 및 놀이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갖춘” - 어린이놀이터와 이를 보완하는 공원시설의 결합체라 할 수 있다.

2. 어린이공원의 종류⁵⁾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공원법은 어린이공원으로 총괄하고 있지만 어린이공원은 연령층(2~15세 어린이 모두를 대상)에 의한 분류와 공원과 기능에 의한 분류로 들 수 있으며 어린이공원을 이용자의 연령정도와 위락행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4) 한국토지개발공사, 신도시의 조경설계, 1987, p. 98

5) 대한국토계획학회, 도시계획편람, 영지문화사, 1985, pp.155~156.

1) 유아공원(pre-school age children's playgrouynd)

주로 연령 전 아동의 놀이터인 동시에 동반자 특히 부인이나 노인들의 휴식 위락의 장소이기도하다.

2) 유년공원(elementary children's playgrouynd)

주로 초등학교 아동(11~12세 이하)의 이용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이다.

3) 소년공원(older children's playgrouynd)

주로 중학교 학생(14~15세 이하)의 이용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으로 유년공원과 소년공원은 실제로는 양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초등·중학교의 시기는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놀이 본능이 최대로 왕성한 시기이며, 또한 심신의 발달도 최대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이 공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들의 생활이 대부분 이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공원은 도시공원 중에서도 가장 이용율이 높다.

4) 모험적 놀이터(pre-school age children's playgrouynd)

모험적 놀이터는 1943년 덴마크에서 발상되어 유럽, 미국, 캐나다 등지에 보급된 특수한 놀이터로서 전통적 의미의 놀이터와는 판이한 성격을 띄고 있다. 모험적 놀이터는 정교하게 설계된 놀이터를 조성하고 거기에 잘 만들어진 놀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놀이터 내에 오히려 폐기물이나 조각난 물건, 즉 헌 자동차 타이어, 나무토막, 건축공사장에서나 발견되는 자갈, 모래, 헌 철사토막 등을 두어 이를 어린이들이 자유자재로 쌓고 허물면서 놀 수 있도록 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어린이의 안전과 올바른 놀이 지도를 위해 놀이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이 놀이 지도자의 임무는 오직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지 어린이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5) 후보지 선정과 유치거리

(1) 아동공원

가깝내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하고 있는 곳 또는 공동주택의 옥상 등이 적합하다.

유치거리는 250m 이하로 하고 200m가 적당하다. 본 공원은 일반아동공원, 근린공원 등과 함께 설치되기도 한다. 특히, 면적이 큰 공원과 같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부에 위치시켜 유아가 안전하고 용이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한다.

(2) 유년 및 소년공원

전철이나 기차의 노선, 교통이 혼잡한 도로 등이 단지 내를 지나지 않는 장소가 적합하다. 유치거리는 800m이하로써 400~500m가 적당하다. 또한 당해 공원이 「서비스」하는 지역의 전체아동이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며, 평등한 배치를 해야한다. 따라서 대부분 아동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정을 아동공원으로 정비하는 것도 일반이며 공원을 별개의 것으로 하여 교정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것도 좋다. 이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소요면적 산정에 있어 일반적인 면적기준이 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3) 특수공원(교통공원, 기타)

시가지 또는 시가지와 근접한 장소로써 아동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지형조건은 공원의 목적에 따라 상의로 선택될 수 있다.

6) 부지시설 설계기준

(1) 아동용 놀이 시설설계상의 유의사항

- 어린이들에게 항상 새로운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도록 설계한다. 놀이터의 사고는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에 지루함을 느낌으로 인해 발생함을 상기할 것.
- 항상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에게 상상이 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적절한 한계 내에서의 상상불가능은 어린이들의 물리적 활동에 창의성을 부여하는 중요 요소이며 동시에 이것이 바로 놀이의 기본정신이다.
- 놀이시설은 여러 연령계층의 어린이가 동시에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한 감시인이 없어도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놀이터설계의 기본요소

- 지표면 : 콘크리트, 아스팔트, 모래, 물, 잔디, 진흙 따위
- 태양광선 : 양지, 음지
- 놀이활동공간 ; 놀이시설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놀이활동공간의 종류는 다음의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함이 놀이터의 관리 및 유치상 유리하다.
 - 평행봉, 미끄럼틀, 정글짐 등 놀이용 구조물
 - 조경이 된 일반적 놀이 공간 : 유아 및 유년을 위해서는 소규모의 경사면 잔디, 소년에게는 놀이용 운동장
 - 너저분한 폐물 따위를 놓아두는 공터 : 유아 및 유년을 위해서는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는 포장된 공터 또는 모래밭, 소년에게는 여러 가지 폐물을 놓아두고 이를 이용하여 공작할 수 있는 넓은 폐쇄된 공터를 마련한다.
 - 경기용 트랙, 자전거 따위를 탈 수 있는 놀이 공간
 - 도보지 또는 모래밭
 - 휴게소, 보관소, 관리소 따위를 포함하는 옥내 놀이시설

이용자의 연령계층, 놀이터의 특성에 따라 상기 범주의 놀이가 적정배치 되도록 설계한다.

3. 어린이공원 놀이공간의 영역구분 및 필요성

주거공간내 놀이공간을 중심으로 한 영역별 이용 행태를 보면 주거동은 사적영역, 유아놀이터는 반공공(半公共)적 영역,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은 공공영역, 지구공원은 광역 공공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놀이공간의 필요성에 대하여 덴마크 아동심리학자 Knud Lasmussen은 어린이놀이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 1) 놀이를 통해 주위를 배운다.
- 2) 놀이를 통해 환상과 감상을 스스로 연출한다.
- 3) 놀이를 통해 다른 어린이들과의 공동생활을 배우고 사회규범을 익힌다.
- 4) 놀이를 통해 신체의 활동기능을 익숙하게 하고 성장 후 직업선택에 많은 영향을 준다.
- 5) 놀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취미활동이 이루어진다.

4. 공원시설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시설설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노인복지회관은 제외), 휴양시설, 운동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 시설에 한한다.

1) 조경시설

조경시설의 종류에는 관상용 식수대, 잔디밭, 산울타리, 그늘시렁, 못, 폭포가 있다.

2) 휴양시설

휴양시설의 종류에는 야유회장, 야영장,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이 있다.

3) 유흥시설

유흥시설의 종류에는 시소, 정글짐, 사다리, 순환회전차, 모노레일, 삭도, 발물놀이터, 뱃놀이터, 낚시터가 있다.

4) 운동시설

운동시설의 종류에는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육상경기장, 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함), 스케이트장, 조정장, 체력단련시설, 씨름장, 레슬링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 롤러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승마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요트장, 경륜장, 검도장, 볼링장, 간이골프장, 자연체험장이 있다.

5) 놀이시설

놀이란 함은 작업과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행위에서 탈피된 자유롭고 즐거운 행위를 의미한다.

어른에게 있어서의 놀이란 오락과 휴식이며 일에서의 탈피이지만 어린이에게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인성의 발달 등 모든 면에 가치를 지닌 활동이며, 생활의 일부로서 체험을 통한 창조적인 경험을 쌓아가기도 한다.

놀이시설은 이용자인 어린이의 신체적(Physical), 정서적(Emotional), 미적(Aesthetic), 감각적(Sensory), 인지적(Cognitive) 발달을 고무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이용자 계층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놀이시설로의 기능수행과 시각적 경관의 만족도도 고려되어야 한다.⁶⁾ 또한 놀이의 환경 변화에

용이하게 적응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어린이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변화있고 특색있게 설계하여야 하며 벤치, 파고라 등 휴식시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배치에 있어서 미끄럼틀은 북향, 그네는 태양을 바로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금속재 시설물은 가급적 그늘에 위치하도록 설계 및 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어린이 놀이의 방법도 시대와 함께 많이 변모되었고 개발로 인한 산야의 훼손으로 요즘 어린이들은 자연놀이를 알지 못한다. 이는 신문화인 오락과 컴퓨터에 의존하는 놀이문화 형태를 가져오고 있다.

6) 박돈서 교수와 일부 놀이시설 관련 전문가들은 놀이시설은 놀이시설의 자체기능 외에도 단지 경관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연구관리심의회 내용)

Ⅲ. 울산광역시 어린이공원 현황

1. 어린이공원 현황

1) 조성현황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 어린이공원 조성 현황을 개소수와 면적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총 273개소 560,006.5㎡이며 조성이 완료된 곳은 137개소 276,005.6㎡, 현재 조성이 진행중인 곳은 120개소 234,708.9㎡, 아직 조성이 안된 곳은 16개소 49,292㎡이다.

이를 다시 울산광역시의 행정구역인 4개구, 1군별로 알아보면 중구는 총 55개소 120,561.3㎡중 조성 완료된 곳이 34개소 59,069.3㎡, 조성중인 곳이 17개소 38,670㎡, 미조성인 곳이 4개소 22,822㎡이다. 그리고 남구는 총 75개소 177,840.4㎡가운데 조성이 끝난 곳이 52개소 124,146.6㎡, 조성중인 곳이 23개소 53,693.8㎡이며 미조성인 곳은 없다. 동구는 38개소 65,704.6㎡중 조성 완료된 곳이 25개소 41,883.9㎡, 조성중인 곳이 13개소 23,820.7㎡이고 미조성인 곳은 없다. 북구는 26개소 50,743.6㎡중 조성이 완료된 곳이 8개소 17,004.6㎡, 조성중인 곳이 14개소 21,000㎡이고, 미조성인 곳은 4개소 12,739㎡이다. 마지막으로 울주군의 경우 총 79개소 145,156.6㎡중 조성이 끝난 곳이 18개소 33,901.2㎡, 조성중인 곳이 53개소 97,524.4㎡, 미조성인 곳은 8개소 13,731㎡이다.

이를 다시 개소수와 면적의 비율로 알아보면 울산광역시 전체의 경우 조성 완료된 곳이 50.2%, 49.3%, 조성중인 곳이 44%, 41.9%, 미조성인 곳이 5.9%, 8.8%이다. 각 구·군별로 살펴보면 중구의 경우 조성이 끝난 곳이 61.8%, 49%, 조성중인 곳이 31%, 32.1%, 미조성인 곳이 7.3%, 18.9%이다. 남구는 조성완료가 69.3%, 69.8%, 조성중인 곳이 30.7%, 30.2%이며 미조성인 곳은 없

다. 동구는 조성완료가 65.8%, 63.7%, 조성중이 34.2%, 36.3%이고 미조성은 없다. 북구는 조성완료가 30.7%, 33.5%, 조성중은 53.8%, 41.4%, 미조성은 15.4%, 25.1%이다. 마지막으로 울주군의 경우에는 조성완료가 22.8%, 23.3%, 조성중인 곳은 67.1%, 67.2%이며 미조성인 곳은 10.1%, 9.5%이다.

<표 1> 어린이 공원 조성현황

단위 : m²

구군별	계		조 성 중		미 조 성	
	개 소 수	면 적	개 소 수	면 적	개 소 수	면 적
계	273	560,006.5	120	234,708.9	16	49,292
%	100.0	100.0	44.0	41.9	5.9	8.8
중 구	55	120,561.3	17	38,670	4	22,822
%	20.2	21.5	31.0	32.1	7.3	18.9
남 구	75	177,840.4	23	53,693.8	-	-
%	27.5	31.8	30.7	30.2	-	-
동 구	38	65,704.6	13	23,820.7	-	-
%	13.9	11.7	34.2	36.3	-	-
북 구	26	50,743.6	14	21,000	4	12,739
%	9.5	9.1	53.8	41.4	15.4	25.1
울주군	79	145,156.6	53	97,524.4	8	13,731
%	28.9	25.9	67.1	67.2	10.1	9.5

(cont'd)

구군별	조 성 완 료					
	계		정 비 불 요		정 비 대 상	
	개 소 수	면 적	개 소 수	면 적	개 소 수	면 적
계	137	276,005.6	68	143,562.7	69	132,443
%	50.2	49.3	24.9	25.6	25.3	23.7
중 구	34	59,069.3	27	47,082.6	7	11,986.7
%	61.8	49.0	49.1	39.1	12.7	9.9
남 구	52	124,146.6	22	61,336.2	30	62,810.5
%	69.3	69.8	29.3	34.5	40.0	35.3
동 구	25	41,883.9	9	14,157	16	27,726.9
%	65.8	63.7	23.7	21.6	42.1	42.2
북 구	8	17,004.6	7	15,125.6	1	1,876
%	30.7	33.5	26.9	29.8	3.8	3.7
울주군	18	33,901.2	3	5,861.3	15	28,039.9
%	22.8	23.3	3.8	4.0	19.0	19.3

자료 : 울산광역시 공원녹지현황, 1998. 7. 1. 현재

2) 시설물 현황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내 시설물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황

공 원 명		소 계	학성토지 제1공원	학성토지 제2공원	반구토지 제1공원	반구토지 제2공원	반구토지 제3공원
면 적(m²)		111,039.3	996.6	478.4	1,201	1,214.4	1,676.1
공 원 시 설	소 계	738	18	-	14	12	16
	미끄럼틀	8	1				
	정글집	7					
	시이소	38	1		1		
	그네	12	2				
	사다리	6	2				
	철봉	34	2		1	1	
	평행봉	6				1	
	링	4				1	
	운동장및사장	5					
	의자	414	8		10	2	15
	윗몸일으키기	10				2	
	조합놀이대	33			1	1	
	휴지통	29					
	파고라	41			1	1	1
	화장실	10					
	경로당	3					
	공원등						
	기타	79	2			3	
조경수			은행나무 16본		광나무 13종904본		가이즈까향 외14종352본
공 원 부 적 시 설	소 계	6	1	1			
	동사무소						
	유아원	4	1				
	파출소	1					
	새마을회관						
	급수시설						
	창고						
	주택						
	쓰레기집하장						
	게이트볼장						
	기타	1		1			

(cont'd)

공 원 명		북산택지 제1공원	북산택지 제2공원	북산택지 제3공원	병영성지 공원	약사2일단지 제1공원
면 적(m')		5,402	2,051	5,402.6	13,300	1,500
공 원 시 설	소 계			20		
	미끄럼틀					
	정글짐					
	시이소	1	1	1		
	그네		1			
	사다리	1				
	철봉		1	1		
	평행봉	1				
	링	2				
	운동장및사장					
	의자	13	10	11		
	윗몸일으키기	2		2		
	조합놀이대	1	1	1		
	휴지통					
	파고라		1	1		
	화장실			1		
	경로당		1			
	공원등					
	기타	3		2		
조 경 수		삼나무외 16종3,852본	삼나무외 13종179본	은행나무외 18종292본		
공 원 부 적 시 설	소 계					
	동사무소					
	유아원					
	파출소					
	새마을회관					
	급수시설					
	창고					
	주택					
	쓰레기집하장					
	게이트볼장					
	기타					

(cont'd)

공 원 명		서동토지 제1공원	서동토지 제2공원	서동토지 제3공원	옥교학산토지 제1공원	옥교학산토지 제2공원
면 적(m')		2,618	2,618	2,617	680.6	706.8
공 원 시 설	소 계	21	20	19		
	미끄럼틀	1	1	1		
	정글짐			2		
	시이소	1	1	2		
	그네	2	1	1		
	사다리	2				
	철봉	2	2			
	평행봉					
	링					
	운동장및사장					
	의자	13	15	13		
	윗몸일으키기					
	조합놀이대					
	휴지통					
	파고라					
	화장실					
	경로당					
	공원등					
	기타					
조 경 수		해송외 5종962본	해송외 8종941본	해송외 4종749본	느티나무외 2종4본	튜립외 11종1,729본
공 원 부 적 시 설	소 계				1	
	동사무소					
	유아원					
	파출소				1	
	새마을회관					
	급수시설					
	창고					
	주차택					
	쓰레기집하장					
	게이트볼장					
	기타					

(cont'd)

공 원 명		옥교학산토지 제3공원	우정일단지 제1공원	우정일단지 제2공원	우정토지 제1공원	우정공원
면 적(m')		661.9	1,562	1,500	1,459.2	669
공 원 시 설	소 계	1	32		38	21
	미끄럼틀					1
	정글짐					
	시이소		2			1
	그네					3
	사다리					1
	철봉					
	평행봉					
	링					
	운동장및사장					
	의자		26		10	10
	윗몸일으키기					
	조합놀이대	1	2		1	
	휴지통				3	4
	파고라		2			1
	화장실					
	경로당				1	
	공원등					
조 경 수		향나무의 1종4본	벗나무의 4종1,736본	무궁화의 5종714본	해송의 13종980본	은행나무의 1종8본
공 원 부 적 시 설	소 계	1				
	동사무소					
	유아원	1				
	파출소					
	새마을회관					
	급수시설					
	창고					
	주택					
	쓰레기집하장					
	게이트볼장					
	기타					

(cont'd)

공 원 명		남외2일단지 제1공원	남외2토지 제1공원	남외토지 제1공원	남외토지 제2공원	남외토지 제3공원
면 적(m')		426.4	2,098	1,985.6	1,657.7	1,606
공 원 시 설	소 계	7	43	8	19	11
	미끄럼틀	1				1
	정글집	1	1	1	1	
	시이소	2	3	1	1	1
	그네	1	1	1		1
	사다리		1			
	철봉		4		1	1
	평행봉		2			
	링					
	운동장및사장					
	의자	2	20	2	14	4
	윗몸일으키기		2			
	조합놀이대			1	1	
	휴지통					
	파고라		1	1	1	1
	화장실					
	경로당					
	공원등					
	기타		8	1		2
조 경 수		무궁화의 1종82본	느티나무의 15종542종	은행나무의 9종32본	은행나무의 9종1,175본	해송의 13종1,043본
공 원 부 적 시 설	소 계			1		
	동사무소					
	유아원			1		
	파출소					
	새마을회관					
	급수시설					
	창고					
	주택					
	쓰레기집하장					
	게이트볼장					
	기타					

(cont'd)

공 원 명		태화토지 제1공원	태화택지 제1공원	태화택지 제2공원	태화택지 제3공원	태화택지 제4공원
면 적(m²)		1,490.1	1,649.2	2,037.1	2,040	2,420
공 원 시 설	소 계	5	13	18	18	19
	미끄럼틀	1				
	정글짐			1		
	시이소	1		1		1
	그네	1				
	사다리					
	철봉	1		1		
	평행봉				1	
	링					
	운동장및사장					
	의자		10	12	14	12
	윗몸일으키기					
	조합놀이대		1	1	1	2
	휴지통					
	파고라		1	1	1	2
	화장실		1	1	1	1
	경노당					1
	공원등					
	기타	1				
조 경 수		느티나무외 7종461본	광나무외 12종2,038본	느티나무외 12종1,781본	해송외 26종506본	백합외 14종2,360본
공 원 부 적 시 설	소 계	1				
	동사무소					
	유아원	1				
	파출소					
	새마을회관					
	급수시설					
	창고					
	주택					
	쓰레기집하장					
	게이트볼장					
	기타					

(cont'd)

공 원 명		태화2토지 제1공원	태화2토지 제2공원	다운택지 제1공원	다운택지 제2공원	다운택지 제3공원
면 적(m')		1,824	1,644	1,350.5	1,625.5	1,506.3
공 원 시 설	소 계	23	29	20	21	15
	미끄럼틀					
	정글짐					
	시이소	1		1	2	1
	그네					
	사다리					
	철봉	1	1	1	1	2
	평행봉		1			
	링		1			
	운동장및사장					
	의자	17	16	6	12	2
	윗몸일으키기		2			
	조합놀이대	1	1	1	2	2
	휴지통					
	파고라	3	2	1	1	1
	화장실			1	1	1
	경로당					
	공원등					
	기타		5	9	2	6
조 경 수		동백나무외 11종1,058본	동백나무외 8종936본	단풍나무외 7종563본	느릅나무외 12종642본	단풍나무외 10종227본
공 원 부 적 시 설	소 계					
	동사무소					
	유아원					
	파출소					
	새마을회관					
	급수시설					
	창고					
	주택					
	쓰레기집하장					
	게이트볼장					
	기타					

(cont'd)

공 원 명		다운택지 제4공원	다운택지 제5공원	성안토지 제1공원	성안토지 제2공원	성안토지 제3공원
면 적(m²)		1,770.4	1,633	1,500	1,500	1,500
공 원 시 설	소 계	17	14	23	23	24
	미끄럼틀					
	정글짐					
	시이소	1	1	1	1	1
	그네					
	사다리					
	철봉	2	1	1	1	1
	평행봉					
	링					
	운동장및사장					1
	의자	5	2	15	15	14
	윗몸일으키기					
	조합놀이대	2	1	1	1	1
	휴지통			3	3	4
	파고라	1	1	2	2	2
	화장실	1	1			
	경로당					
	공원등					
	기타	5	7			
조 경 수		단풍나무의 9종951본	은행나무의 10종563본	동백의 14종593본	동백의 14종903본	동백의 14종706본
공 원 부 적 시 설	소 계					
	동사무소					
	유아원					
	파출소					
	새마을회관					
	급수시설					
	창고					
	주택					
	쓰레기집하장					
	게이트볼장					
	기타					

(cont'd)

공 원 명		성안토지 제4공원	성안토지 제5공원	성안토지 제6공원	성안토지 제7공원	성안2토지 제1공원
면 적(m')		1,500	4,767	1,500	3,000	2,024
공 원 시 설	소 계	25	31	25	36	
	미끄럼틀					
	정글짐					
	시이소	1	2	2	2	
	그네					
	사다리					
	철봉	1	1	1	1	
	평행봉					
	링					
	운동장및사장	1	1	1	1	
	의자	15	20	15	23	
	윗몸일으키기					
	조합놀이대	1	1	1	1	
	휴지통	4	4	3	5	
	파고라	2	2	2	3	
	화장실					
	경로당					
	공원등					
	기타					
조 경 수		느티나무외 8종329본	동백외 14종578본	동백외 15종868본	목련외 13종534본	
공 원 부 적 시 설	소 계					
	동사무소					
	유아원					
	파출소					
	새마을회관					
	급수시설					
	창고					
	주택					
	쓰레기집하장					
	게이트볼장					
	기타					

(cont'd)

공 원 명		성안2토지 제2공원	성안2토지 제3공원	성안2토지 제4공원	성안2토지 제5공원	성안2토지 제6공원	성안2토지 제7공원
면 적(m')		2,400	2,150	2,150	2,259	2,150	2,150
공 원 시 설	소 계						
	미끄럼틀						
	정글짐						
	시이소						
	그네						
	사다리						
	철봉						
	평행봉						
	링						
	운동장및사장						
	의자						
	윗몸일으키기						
	조합놀이대						
	휴지통						
	파고라						
	화장실						
	경로당						
	공원등						
조 경 수							
공 원 부 적 시 설	소 계						
	동사무소						
	유아원						
	파출소						
	새마을회관						
	급수시설						
	창고						
	주택						
	쓰레기집하장						
	게이트볼장						
	기 타						

(cont'd)

공 원 명		성안2토지 제8공원	성안2토지 제9공원	남외운동장 제1공원	남외운동장 제2공원	남외운동장 제3공원
면 적(m')		2,040	4,580	2,600	2,822	4,100
공 원 시 설	소 계					
	미끄럼틀					
	정글짐					
	시이소					
	그네					
	사다리					
	철봉					
	평행봉					
	링					
	운동장및사장					
	의자					
	윗몸일으키기					
	조합놀이대					
	휴지통					
	파고라					
	화장실					
	경로당					
	공원등					
공 원 부 적 시 설	기타					
	소 계					
	동사무소					
	유아원					
	파출소					
	새마을회관					
	급수시설					
	창고					
	주택					
	쓰레기집하장					
	게이트볼장					
	기타					

자료 : 울산광역시중구 공원대장, 1998. 7. 1현재

유희 시설로는 미끄럼틀 7개, 정글집 7개, 시이소 39개, 그네 12개, 사다리 6개, 철봉 34개, 평행봉 6개, 링 4개, 운동장 및 사장 5개, 조합놀이대 33개가 있으며 휴양시설로 경로당 3곳이 있고 편익시설로 의자 424개, 휴지통 29개, 화장실 10개소, 조경시설로는 파고라 41개가 있으며 기타시설물 79개 등 총 738개의 공원시설물이 있다.

이를 각각의 어린이공원별로 살펴보자. 학성토지 제1공원에는 미끄럼틀 1개, 시이소 1개, 그네 2개, 사다리 2개, 철봉 2개, 의자 8개, 기타의 시설물 2개 등 총 18개의 시설물이 있으며 학성토지 제2공원에는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구토지 제1공원에 시이소 1개, 철봉 1개, 의자 10개, 조합놀이대 1개, 파고라 1개 등 총 14개의 시설물이 있다. 반구토지 제2공원에는 철봉, 평행봉, 링, 조합놀이대, 파고라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와 윗몸 일으키기가 각각 2개씩 총 12개의 시설물이 있고, 반구토지 제3공원에는 의자가 15개, 파고라가 1개 총 16개의 시설물이 있다.

북산택지 제1공원에는 시이소 1개, 사다리 1개, 평행봉 1개, 링 2개, 의자 13개, 윗몸 일으키기 2개, 조합놀이대 1개, 기타 3개 등 총 24개의 시설물이 있다. 북산택지 제2공원에는 시이소, 그네, 철봉, 조합놀이대, 파고라가 각각 1개씩, 의자가 10개 등 총 15개가 있고 경로당이 1개소 있으며 북산택지 제3공원에는 시이소 1개, 철봉 1개, 의자 11개, 윗몸 일으키기 2개, 조합놀이대 1개, 파고라 1개, 기타 2개 등 총 19개가 있고 화장실 1개소가 있다.

병영성지공원과 약사2일단지공원에는 아직 설치된 시설물이 없다.

서동토지 제1공원에는 미끄럼틀 1개, 시이소 1개, 그네 2개, 사다리 2개, 철봉 2개, 의자 13개 등 총 21개의 시설물이 있고, 서동토지 제2공원의 경우에는 미끄럼틀, 시이소, 그네가 각각 1개씩, 철봉이 2개, 의자 15개 등 총 20개의 시설물이 있다. 서동토지 제3공원에는 미끄럼틀 1개, 정글집 2개, 시이소 2개, 그네 1개, 의자 13개 등 총 19개가 있다.

옥교학성토지 제1·2공원에는 아직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옥교학성토지 제3공원에는 조합놀이대 1개만이 설치되어 있다. 우정일단지 제1공원에는 시이소, 조합놀이대, 파고라가 각각 2개씩, 의자 26개 등 총 32개가 있고, 우정일단지 제2공원에는 아직 시설물이 없다. 우정토지 제1공원에는 의자 10개, 조합놀이대 1개, 휴지통 3개, 탁자 등의 기타 시설물이 23개 등 총 37개의 시설물이 있으며 경로당이 1개소 있다.

남외2일단지 제1공원에는 미끄럼틀, 정글짐, 그네가 각각 1개씩, 시이소와 의자가 각각 2개씩 총 7개가 있고, 남외2토지 제1공원에는 정글짐 1개, 시이소 3개, 그네 1개, 사다리 1개, 철봉 4개, 평행봉 2개, 의자 20개, 윗몸 일으키기 2개, 파고라 1개, 기타 8개 등 총 43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남외토지 제1공원에는 정글짐, 시이소, 그네, 조합놀이대, 파고라, 기타의 시설물이 각각 1개씩, 의자가 2개 총 8개가 있다. 남외토지 제2공원에는 정글짐, 시이소, 철봉, 조합놀이대, 파고라가 각각 1개씩, 의자가 14개 등 총 19개의 시설물이, 남외토지 제3공원에는 미끄럼틀, 시이소, 그네, 철봉, 파고라가 각각 1개씩, 의자가 4개, 기타가 2개 등 총 11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태화토지 제1공원에는 미끄럼틀, 시이소, 그네, 철봉, 기타가 각각 1개씩 총 5개의 시설물이 있다. 태화택지 제1공원에는 의자가 10개, 조합놀이대 1개, 파고라 1개 등 총 12개가 있고 화장실이 1개소 있으며, 태화택지 제2공원에는 정글짐, 시이소, 철봉, 윗몸 일으키기, 파고라가 각각 1개씩, 의자가 12개 등 총 17개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이 1개소 있다. 태화택지 제3공원에는 평행봉, 조합놀이대, 파고라가 각각 1개씩, 의자 14개 등 총 17개가 있고 화장실이 1개소 있다. 태화택지 제4공원에는 시이소 1개, 의자 12개, 조합놀이대 2개, 파고라 2개 등 총 17개가 있으며 화장실이 1개소 있다. 태화2토지 제1공원에는 시이소 1개, 철봉 1개, 의자 17개, 조합놀이대 1개, 파고라 3개 등 총 23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태화2토지 제2공원에는 철봉, 평행봉, 링, 조합놀이대가 각각 1개씩, 의자가 16개, 윗몸 일으키기 2개, 파고라 2개, 기타 5개 등 총

29개가 설치되어 있다.

다운택지 제1공원에는 시이소, 철봉, 조합놀이대, 파고라가 각 1개씩, 의자가 6개, 기타 9개 등 총 19개의 시설물이 있고 화장실이 1개소 있으며, 다운택지 제2공원에는 시이소 2개, 철봉 1개, 의자 12개, 조합놀이대 2개, 파고라 1개, 기타 2개 등 총 20개의 시설물이 있고 화장실이 1개소 있다. 다운택지 제3공원에는 시이소 1개, 철봉 2개, 의자 2개, 조합놀이대 2개, 파고라 1개, 기타 6개 등 총 14개의 시설물 및 화장실이 있고, 다운택지 제4공원에는 시이소 1개, 철봉 2개, 의자 5개, 조합놀이대 2개, 파고라 1개, 기타 5개 등 총 16개의 시설물과 화장실 1개소가 있으며, 다운택지 제5공원에는 시이소 1개, 철봉 1개, 의자 2개, 조합놀이대 1개, 파고라 1개, 기타 7개 등 총 13개의 시설물이 있고 화장실 1개소가 있다.

현재 조성중인 성안지구내 성안토지 제1공원과 성안토지 제2공원에는 똑같이 시이소 1개, 철봉 1개, 의자 15개, 조합놀이대 1개, 휴지통 3개, 파고라 2개 등 총 23개의 시설물이 있다. 성안토지 제3공원에는 시이소, 철봉, 운동장 및 사장, 조합놀이대가 각각 1개씩, 휴지통 4개, 파고라 2개, 의자가 14개 등 총 24개의 시설물이 있으며 성안토지 제4공원에는 시이소, 철봉, 운동장 및 사장, 조합놀이대가 각각 1개씩, 휴지통 4개, 파고라 2개, 의자가 15개 등 총 24개의 시설물이 있다. 성안택지 제5공원에는 시이소 2개, 철봉 1개, 운동장 및 사장 1개, 의자 20개, 휴지통 4개, 조합놀이대 1개, 파고라 2개 등 총 31개가 있으며, 성안택지 제6공원에는 시이소 2개, 철봉 1개, 운동장 및 사장 1개, 의자 15개, 조합놀이대 1개, 휴지통 3개, 파고라 2개 등 총 26개가 있다. 성안토지 제7공원에는 시이소 2개, 철봉 1개, 운동장 및 사장 1개, 의자 23개, 조합놀이대 1개, 휴지통 5개, 파고라 3개 등 총 36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성안2토지 제1공원부터 성안2토지 제9공원까지의 총 9개의 공원은 현재 기반 조성중이라 설치된 시설물이 없다.

공원내 부적 시설인 유아원(어린이방) 4개소, 파출소 1개소, 공용 주차장 1개

소가 있다. 공원내 유아원이 많은 이유는 '97년까지 어린이 공원의 관리가 가정·사회복지 분야에서 관리업무를 관장하여 행정편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원관리 현황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하여 '98년 현재 일시 사역인부 6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으로 연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연중 작업으로는 공원내 매일 화장실 청소, 수벽전정 년중2회, 병해충방제 년4회, 잔디제초 2회, 예초 3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시설물의 손·망실에 따른 복구는 연중 3회로 시행한다. 그러나 비 전문인력의 공원관리에 따른 미숙함과 관리대상 공원간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 작업의 효율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4) 조경수 식재 현황

각 공원의 조경수 식재 현황을 살펴보면, 학성토지 제 1공원에는 은행나무 16본, 반구토지 제 1공원 광나무 외 13종 904본, 반구토지 제 3공원 가이즈까향 외 14종 352본, 복산택지 제 1공원 삼나무 외 16종 3,852본, 복산택지 제 2공원 삼나무 외 13종 179종, 복산택지 제 3공원 은행나무 외 18종 292본, 서동토지 제 1공원 해송 외 5종 962본, 서동토지 제 2공원 해송 외 8종 941본, 서동토지 제 3공원 해송 외 4종 749본, 옥교학산토지 제 1공원 느티나무 외 2종 4본, 옥교학산토지 제 2공원 외 튼잎 외 11종 1,729본, 옥교학산토지 제 3공원 향나무 외 1종 4본, 우정일단지 제 1공원 벚나무 외 4종 1,736본, 우정일단지 제 2공원 무궁화 외 5종 714본, 우정토지 제 1공원 해송 외 13종 980본, 우정공원 은행나무 외 1종 8본, 남외 2일단지 제 1공원 무궁화 외 1종 82본, 남외 2토지 제 1공원 느티나무 외 15종 542본, 남외토지 제 1공원 은행나무 외 9종 32본, 남외토지 제 2공원 은행나무 외 9종 1,175본, 남외토지 제 3공원 해송

외 13종 1,043본, 태화토지 제 1공원 느티나무 외 7종 461본, 태화택지 제 1공원 광나무 외 12종 2,038본, 태화택지 제 2공원 느티나무 외 12종 1,781본, 태화택지 제 3공원 해송 외 26종 506본, 태화택지 제 4공원 백합 외 14종 2,360본, 태화 2토지 제 1공원 동백나무 외 11종 1,058본, 태화 2토지 제 2공원 동백나무 외 8종 936본, 다운택지 제 1공원 단풍나무 외 7종 563본, 다운택지 제 2공원 느릅나무 외 12종 642본, 다운택지 제 3공원 단풍나무 외 10종 227본, 다운택지 제 4공원 단풍나무 외 9종 951본, 다운택지 제 5공원 은행나무 외 10종 563본, 성안토지 제 1공원 동백 외 14종 593본, 성안토지 제 2공원 동백 외 14종 903본, 성안토지 제 3공원 동백 외 14종 706본, 성안토지 제 4공원 느티나무 외 8종 329본, 성안토지 제 5공원 동백 외 14종 578본, 성안토지 제 6공원 동백 외 15종 868본, 성안토지 제 7공원 목련 외 13종 534본이다.

이를 다시 상록수종 및 낙엽수종으로 구분하면 학성토지 제 1공원에는 낙엽수종 16본, 반구토지 제 1공원에는 상록수종 750본 낙엽수종 154본, 반구토지 제 3공원 상록수종 35본 낙엽수종 317본, 복산택지 제 1공원 상록수종 804본 낙엽수종 3,048본, 복산택지 제 2공원 상록수종 93본 낙엽수종 86본, 복산택지 제 3공원 상록수종 40본 낙엽수종 252본, 서동토지 제 1공원 상록수종 624본 낙엽수종 338본, 서동토지 제 2공원 상록수종 553본 낙엽수종 380본, 서동토지 제 3공원 상록수종 420본 낙엽수종 329본, 옥교학산토지 제 1공원 낙엽수종 4본, 옥교학산토지 제 2공원 상록수종 30본 낙엽수종 1,699본 옥교학산토지 제 3공원 상록수종 4본, 우정일단지 제 1공원 상록수종 1,647본 낙엽수종 85본, 우정일단지 제 2공원 상록수종 205본 낙엽수종 505본, 우정토지 제 1공원 상록수종 114본 낙엽수종 866본, 남외 2일단지 제 1공원 상록수종 12본 낙엽수종 70본, 남외 2토지 제 1공원 상록수종 81본 낙엽수종 461본, 남외토지 제 1공원 상록수종 17본 낙엽수종 15본, 남외토지 제 2공원 상록수종 1,055본 낙엽수종 120본, 남외토지 제 3공원 상록수종 781본 낙엽수종 262본, 태화토지 제 1공원 상록수종 433본 낙엽수종 894본, 태화택지 제 1공원 상록수종 1,822본 낙

엽수종 216본, 태화택지 제 2공원 상록수종 1,533본 낙엽수종 248본, 태화택지 제 3공원 상록수종 137본 낙엽수종 369본, 태화택지 제 4공원 상록수종 2,213본 낙엽수종 237본, 태화 2토지 제 1공원 상록수종 952본 낙엽수종 106본, 태화 2토지 제 2공원 상록수종 105본 낙엽수종 831본, 다운택지 제 1공원 상록수종 86본 낙엽수종 477본, 다운택지 제 2공원 상록수종 49본 낙엽수종 593본, 다운택지 제 3공원 상록수종 65본 낙엽수종 162본, 다운택지 제 4공원 상록수종 132본 낙엽수종 819본, 다운택지 제 5공원 상록수종 59본 낙엽수종 504본, 성안토지 제 1공원 상록수종 402본 낙엽수종 191본, 성안토지 제 2공원 상록수종 520본 낙엽수종 383본, 성안토지 제 3공원 상록수종 452본 낙엽수종 254본, 성안토지 제 4공원 상록수종 258본 낙엽수종 71본, 성안토지 제 5공원 상록수종 273본 낙엽수종 305본, 성안토지 제 6공원 상록수종 444본 낙엽수종 424본, 성안토지 제 7공원 상록수종 378본 낙엽수종 156본이다.

어린이공원 전체 39개소에 식재된 32,885본중 상록수종이 17,488본이고 낙엽수종이 15,397본으로 상록수 : 활엽수의 비율이 53 : 47이다.

2.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현황 분석

1) 어린이공원 조성 주체별 현황 분석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위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의거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며 적법 절차에 의거 관리부서인 행정청에 소유권과 함께 관리 이관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조성할 경우 조성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가 일부 또는 전체를 시행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조성 주체별 현황을 분석하면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린이공원은 총 55개소 111,039.3㎡이며 이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조성한 어린이공원은 35개소이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조성한 곳은 12개소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의거 조성한 지역은 4개소이며 미조성이 1개소이다. 이중 조성이 완료되어 관리청으로 이관이 완료된 공원은 34개소 59,069.3㎡로서 이중 공원조성이 미비하여 재조성한 곳이 12개소이며 금후 재조성 하여야 할 곳이 5개소이다. 이중 구획정리조합 시행분이 13개소이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분이 2개소이고 토지개발공사 시행분이 2개소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설치는 아주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조성주체별 현황

조성주체	조성현황 (개소)	조성 완료	재조성 대상공원			비 고
			계	재조성 한 곳	재조성하여 야 할 곳	
계	34개소	16개소	17개소	12개소	5개소	미조성1개소
토 지 개 발 공 사 한 국 주 택 공 사	12개소	10개소	2개소	2개소	-	
토지구획정리조합	19개소	6 개소	13개소	8개소	5개소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3개소	-	2개소	2개소	-	미조성1개소

자료 : 울산광역시중구공원대장, 1998. 7. 1현재

2) 어린이공원 구성 시설별 측면에서의 분석

어린이공원내 시설물은 어린이 전용 시설에 한하여야 하나 경찰서1개소, 유아원4개소, 파출소1개소, 공용주차장이 1개소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임에도 어린이공원을 대신해 주 시설로 자리하고 있다.

공원 시설로서 경로당에 설치된 곳이 3개소 있으며 이는 유아원과 함께 '97까지 관리부서인 사회복지분야에서 행정 편의 및 기관장의 도시공원에 대한 무관심 또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의 유보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조성된 공원내 놀이시설물을 살펴보면 미끄럼틀7개, 정글짐7개, 시이소39개, 그네12개, 사다리6개, 운동장 및 사장5개, 조합놀이대가 33개가 있다. 현행 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내 시설은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은 근린생활권내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외의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인 어린이롤러스케이트장 및 스케이트보드, 노인 및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인 게이트볼장 등 어린이 공원의 용도를 극대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일부 시설의 유치도 필요하다.

3) 공원 유지관리적 측면에서의 분석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은 곳곳에 산재해 있어 현재의 유지관 체제로는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많은 관리인원이 요구되는 비효율적 관리체제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공원이용객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관리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첫째, 휴지통을 없애는 것이다. 울산광역시 중구관내에서 휴지통 없애기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설치한 곳은 8개소이다. 우정토지제1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설치중인 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우정토지1공원의 경우 휴지통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경로당 이용자의 스스로 청소하려는 의지 때문에 배려한 것이며 설치중인 공원내 휴지통 배치는 성안구획정리내로 현재 근린이용권내 거주민이 없으므로 이용자의 불법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려는 행정 편의에 의한 것이다.

둘째, 근린이용권임을 감안, 화장실의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울산광역시 중구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화장실 설치지 10개소와 미설치공원을 중심으로 행정소모 인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화장실 설치공원은 시설관리를 위한 1일 2회 이상의 청소 및 점검이 필요하며 미설치 공원의 경우 공원내 추가 점검인원이 필요 없으며 어린이공원의 유치거리가 250m인 점

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시설투자 손실에 따른 재정 낭비를 초래하며 연간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와 화장실이 청소년들의 주 비행 장소임을 고려하면 설치 필요성이 없다. 이는 또한 이용객의 순환을 가져 올 수도 있으며 더 많은 공원 시설 유치와 무엇보다도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셋째, 동별 마을별 특성 있는 공원별 시설물 설치 및 공원명 지정하여 향토심을 준다. 울산광역시 관내 어린이공원은 행정청에서 재 설치한 곳을 제외하고는 설치 주체 및 지구에 따라 시설물 설치가 대동소이하며 특징적인 시설이 없다.

네째, 소책자나 안내서를 발간하여 어린이공원을 소개하고 관리 책임자를 선정, 관리하게 하고 관리자에게는 각종 시정참여 기회부여 및 시 주관 문화행사 특별 초청장 발부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 공원별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유지관리, 이용 실적에 따라 관리 주체별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차등적인 공원의 유지관리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4) 수목식재 측면에서의 고찰

공원내 수목은 수형, 꽃, 열매가 아름다워야 하며 교육적 가치를 지닌 수목으로서 자극이나 독성이 있는 나무나 꽃가루가 날리는 수목은 없어야 한다.

어린이공원 내부의 기능별 공간 분할을 수목으로 분리하여 정적 놀이공간과 동적 놀이공간으로 차폐식재를 한곳이 있으며 연중 효과적인 산울타리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대부분이 경계담장 또는 투시형 펜스로 경계를 표시하고 있으며 수목의 식재 또한 공원 외주부에 밀식하여 식재된 것이 특징으로서 공원 외주부에는 보행자나 근린 주민이 무의식 중에라도 들여다 볼 수 있게 꾸며져야 하고 차량의 시계가 확보되는 대교목 식재가 지하고를 높이고 접근성과 공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범죄로부터 공간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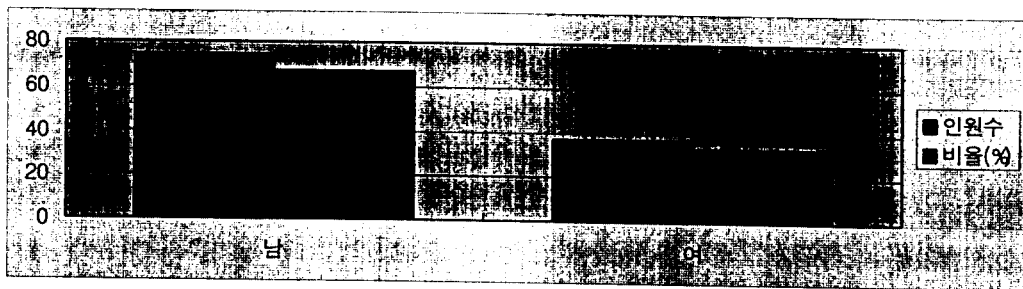
교동어린이공원의 경우 교통공원으로 조성하였으나 조성면적이 작으므로 무질서한 시설물의 난립보다 공간의 구분과 가로수의 효과를 내는 수목으로 심어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린이공원내 식물의 재료는 강건하고 잘 자라며 해충에 강하고 특히 어린이의 장난이나 답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이용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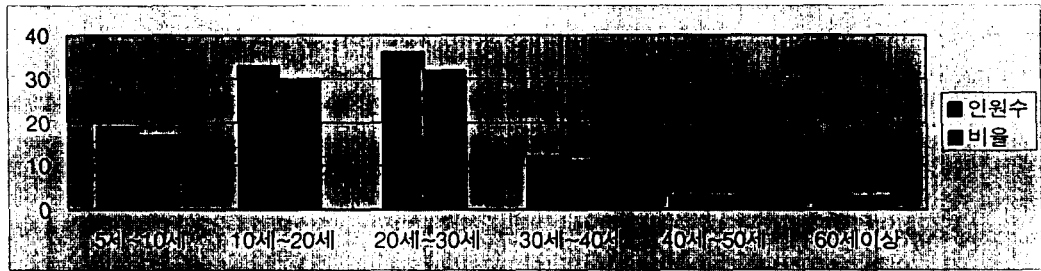
설문조사는 울산광역시중구에 소재한 어린이공원 1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0세 이하 유아의 경우는 문답 형식으로 설문내용을 조사자가 기록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1998. 11. 1~11. 15일간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대상은 총 111명으로 그중 남자가 74명, 여자가 37명으로 남자의 구성비가 67%, 여자가 33%로 <도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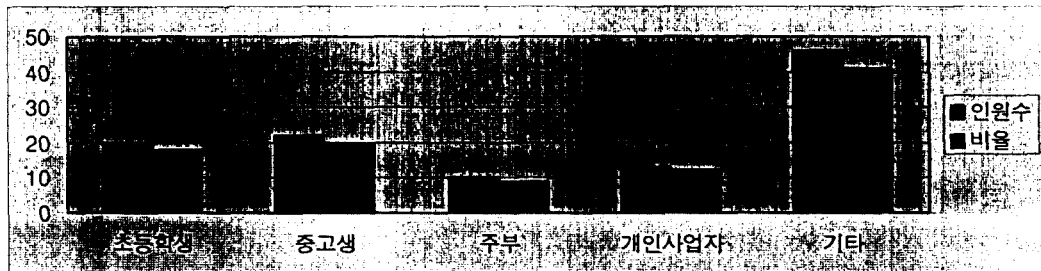
<도 2> 성별 이용자현황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10세가 19명으로 17%이고, 10세~20세가 33명으로 30%를 차지해 20세 이하의 총 구성비가 47%이며, 20세~30세가 36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30세~40세가 12명으로 11%, 60세 이상이 3명으로 3%로 나타났으며 <도 3>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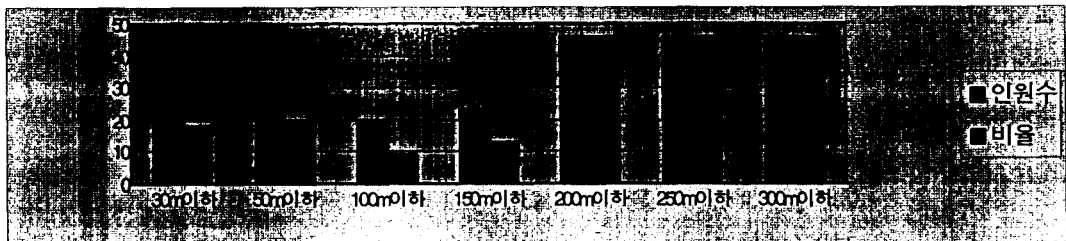
<도 3> 연령별 이용자현황

직업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20명으로 18%, 중고생이 22명으로 20%, 주부가 10명으로 9%, 개인사업자가 13명으로 12%, 기타가 46명으로 41%에 달했으며 <도 4>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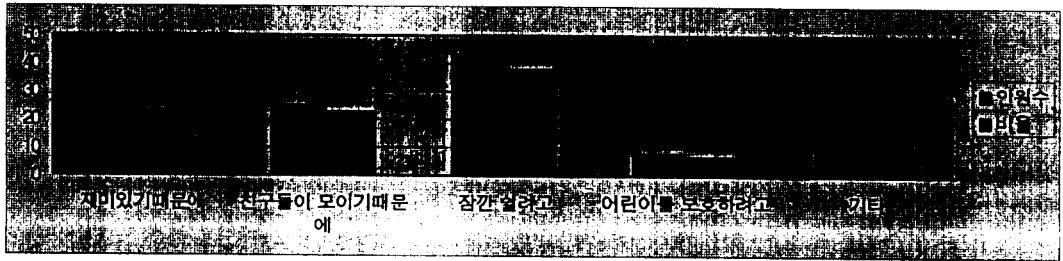
<도 4> 직업별 이용자현황

“귀하의 집은 공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에 150m이하가 65명으로 69%이며, 300m이하가 35명으로 18%로 <도 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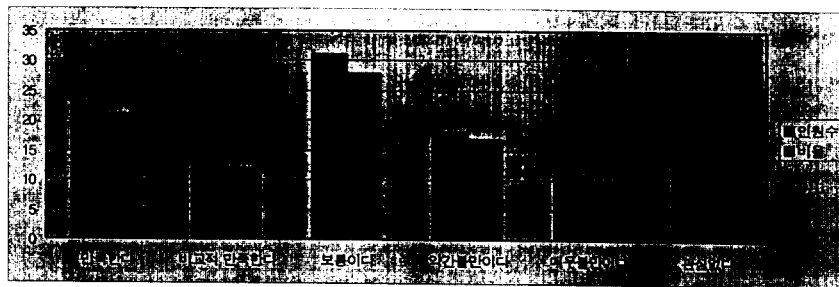
<도 5> 공원이용 권역별 이용자현황

어린이공원을 찾게된 동기는 '여기에 오면 재미있는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라고 답한 응답자와 '친구들이 모이기 때문에'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25명으로 22.5%, '집 가까이에 있어서 잠깐 쉼려고 들른다.'라고 답한 사람이 43명으로 38%, '어린이들의 보호자로 찾는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8명으로 7%로 나타났으며 <도 6>과 같다.



<도 6> 공원이용 동기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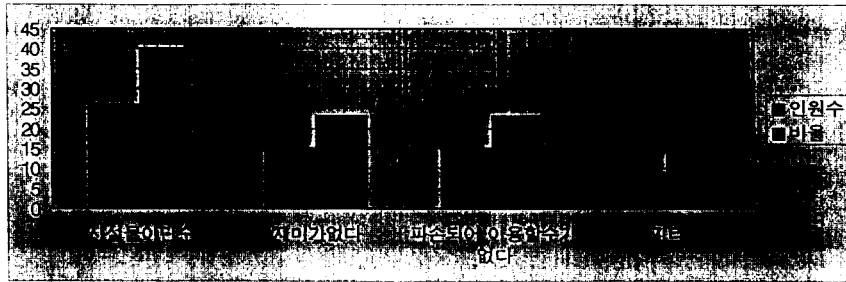
“공원내 시설물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에 대하여 ‘만족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23명 21%, ‘비교적 만족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3명 12%,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1명 28%, ‘약간 불만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8명 17%, ‘매우 불만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1명 10%, ‘관심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13명 12%로서 <도 7>와 같다.



<도 7> 공원시설 만족도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이중 긍정적 답변이 6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불만족한 답변이 27%로서 그 이유로 ‘시설물이 단순하고 재미가 없다.’라는 응답이 62%를 차지했으며,

‘파손되어 이용될 수가 없다.’라고 답한 응답이 23%로 <도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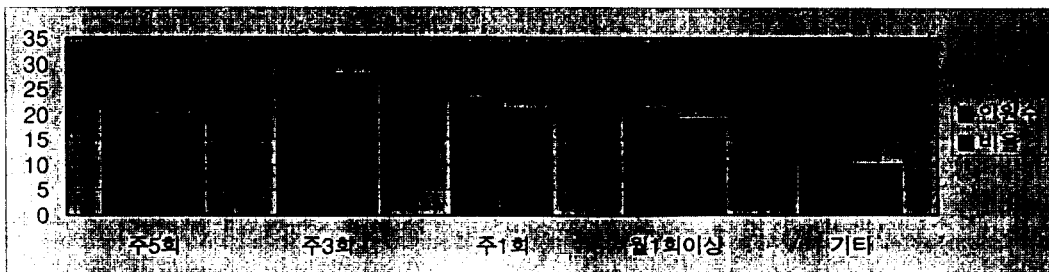
<도 8> 공원시설 불만족 원인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공원에 꼭 있으면 하는 시설물로 놀이시설물 및 운동시설이 각각 28명으로 26.7%, 편익시설이 30명으로 29%, 조경시설이 14%로서 <도 9>과 같다.



<도 9> 공원시설물 선호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공원을 이용하는 빈도에 대하여는 주 5회 이상이 22명으로 20%, 주 3회 이상이 31명으로 28%, 주1회 이상이 23명으로 21%, 월1회 이상이 11명으로 10%를 차지했으며<도 10>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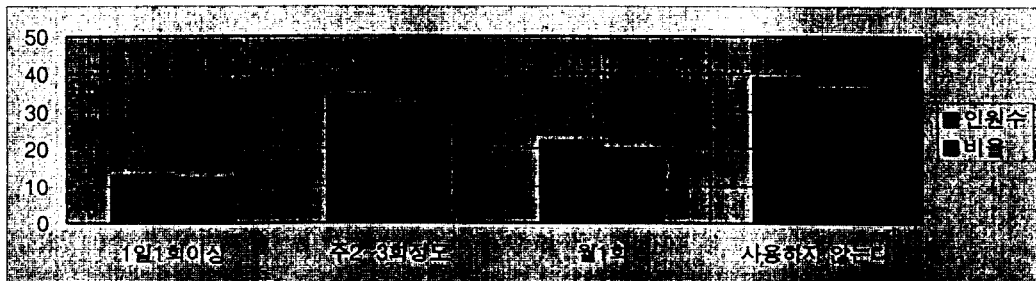
<도 10> 공원 이용빈도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공원에서는 주로 무엇(무슨 놀이)을 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그냥 쉰다.’라는 답변이 전체 항목 중 50%를 차지했고, ‘친구들과 놀이를 하면서 논다.’ 25%, ‘잔디밭, 모래사장에서 논다.’ 5%, ‘놀이기구를 이용해서 논다.’가 15%로서 <도 11>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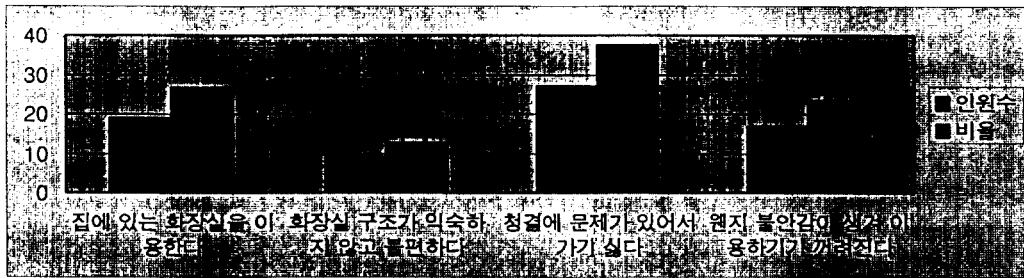
<도 11> 공원 이용행태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어린이공원내 화장실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1일 1회 이상 12%, 주2~3회 정도 31.5%, 월 1회 20%, 사용하지 않는다 36%로 <도 12>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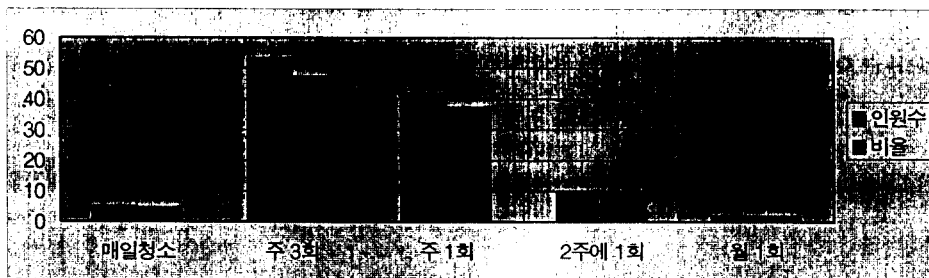
<도 12> 화장실 이용빈도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집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한다. 26.5%, 화장실 구조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다. 12.5%, 청결에 문제가 있어서 가기 싫다. 37.5%, 웬지 불안감이 생겨 이용하기가 꺼려진다. 23.6%로 나타났으며 <도 13>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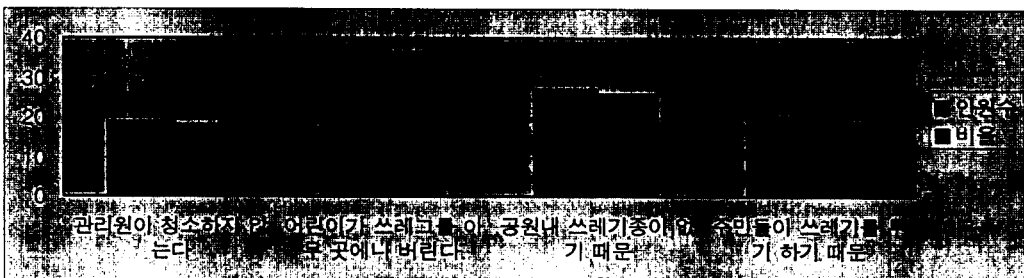
<도 13> 화장실 미사용 원인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하여 공원 청소는 주에 몇 번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에 대한 답변으로 매일 청소 4.5%, 주 3회 47.3%, 주 1회 37.5%, 2주에 1회 9%, 월 1회 2%를 차지했으며 <도 14>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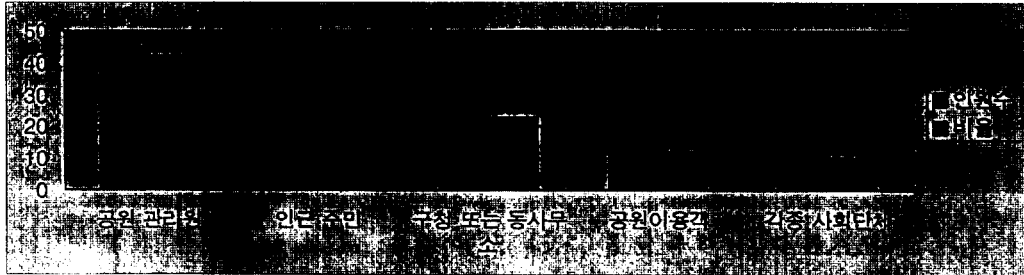
<도 14> 공원 청소횟수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어린이공원이 청결하지 않다면 그 이유로는 관리원이 청소를 하지 않는다. 18.3%, 어린이가 쓰레기를 아무 곳에도 버린다. 36.5%, 공원내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 26%, 주민들이 쓰레기를 투기하기 때문 19%로 나타났으며 <도 1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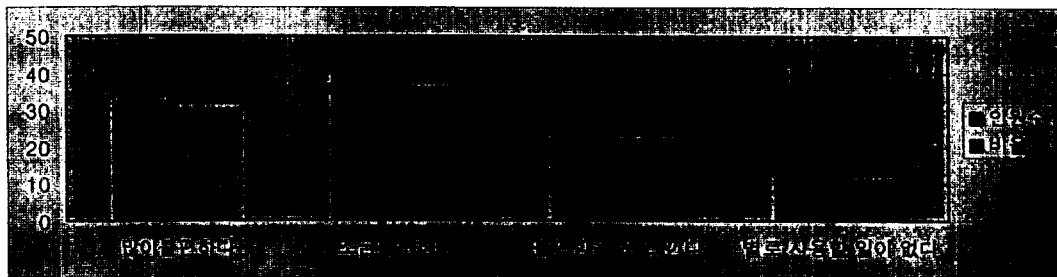
<도 15> 공원 불결 원인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공원의 청결을 위하여 누가 청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응답으로 공원 관리원 42%, 인근 주민 13%, 구청 또는 동사무소 23%, 공원이용객 12%, 각종 사회단체, 인근 초등학교 10%로 나타났으며 <도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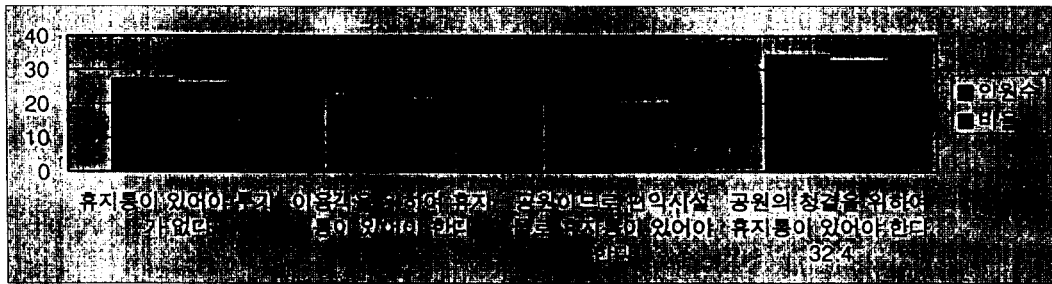
<도 16> 공원청소 주체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울산광역시 중구에서는 1998년 3월부터 쓰레기 되가져오기 일환으로 어린이 공원에 휴지통을 없애고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시행하였다. 휴지통이 없어진 후 주민 설문조사 결과 많이 불편하다. 30%, 조금 불편하다. 36%, 불편함을 못 느낀다. 22%, 별로 사용할 일이 없다. 11%로 나타났으며 <도 17>와 같다.



<도 17> 공원에 휴지통 제거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어린이공원에 휴지통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로 휴지통이 있어야 무단 투기가 없다. 25.7%, 공원에는 이용객을 위하여 휴지통이 있어야 한다. 21%, 공원이므로 편의시설물로 휴지통이 있어야 한다. 20%, 공원의 청결을 위하여 휴지통이 있어야 한다. 32.4%로 나타났으며 <도 1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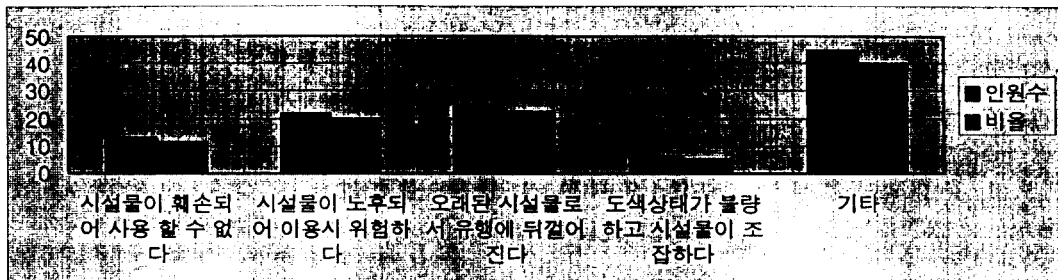
<도 18> 휴지통 설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놀이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에 대하여 만족한다. 12%, 비교적 만족한다 25%, 보통이다 45%, 불만족하나 다른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좋은 편이다 9%, 매우 불만족 한다 8%로 나타났으며 <도 19>과 같다.



<도 19> 놀이시설 유지관리에 주민의식 조사현황

불만족한 이유로 시설물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다 19.4%, 시설물이 노후되어 이용시 위험하다 32.8%, 오래된 시설물로서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37.3%, 도색상태가 불량하고 시설물이 조잡하다 1.5%로서 <도 20>와 같다.



<도 20> 놀이시설 불만족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현황

IV.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어린이공원의 문제점

1) 조성에 따른 문제점

어린이공원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및 구획정리조합, 토지개발공사, 한국주택공사 등에서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시행되고 있다. 구획정리사업시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택지 준공시 공원시설도 함께 이관되어야 함으로 실제 건축 입주 후 공원 이용 시점과 시기가 맞지 않아 사실적 방치에 따른 시설물 파괴 및 조경 수목의 훼손이 빈번하고 청소년 탈선 및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제 3조 별표 '공사계획'에 의한 최소한의 시설 즉, 놀이시설 5개 이상 조항을 악용하여 지피식물 및 수목의 식재는 전무하고 조잡한 어린이 놀이시설물 5개를 방치하므로 행정청 이관 후 재 조성이 불가피하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어린이공원 총 55개소 대상지 중 이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조성한 어린이공원은 35개소이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조성한 곳은 12개소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의거 조성한 지역은 4개소이며 미조성이 1개소로서 조성이 완료되어 관리청으로 이관이 완료된 공원 34개소 중 공원조성이 미비하여 재조성한 곳이 10개소이며 금후 재조성 하여야 할 곳이 7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구획정리조합 시행분이 13개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시행분이 2개소, 토지개발공사 시행분이 2개소로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및 구획정리조합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조성은 극히 미비하게 나타나 조성 주체에 따라 공원의 질적 수준이 차이가 많음을 나타낸다.

2) 부지시설 설계기준의 부재 및 설치시설의 한정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에게 항상 새로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하고 또한 여러 연령계층의 어린이가 동시에 같은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또한 감시인이 없어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의 조성은 도시공원법에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유아공원, 소년공원, 모험적놀이터, 아동공원 등의 특색있는 어린이공원의 조성이 어렵다. 1997년 울산광역시에서 주제공원으로 교통공원을 조성하였으나 부지의 협소와 시설물의 단조로움으로 교육 효과는 크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어린이공원은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인문사회환경에 관계없이 시공주체에 따라 획일적인 부지선정과 설계자의 의도없는 활동공간의 구분을 해 놓았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 6조 1항 2호에 의하면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시설물의 유치가 어렵고 이용선호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가 현행법상 제한되어 있다.

법 취지는 어린이공원내 공원 외적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내 어린이 전용시설만의 설치로 어린이에게 창의력을 높이고 놀이를 통해 지능을 발달시키는 등 어린이를 위한 계기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원시설로는 설치할 수 없으나 어린이공원내 공원점용시설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영구시설의 설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법 제 8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점용허가의 대상)에 의하면 도시공원내에는 공원시설 외에 13개 항목의 많은 시설을 도시공원점용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원시설로의 설치를 제한하는 많은 것을

포함하며 반영구적인 시설도 다수 있다.

조성계획수립 당시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은 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일시적인 공원점용허가의 형태로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는 법의 악용이라기보다 제도적인 허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공원에는 현행법상 설치가 불가한 공원내 부적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유아원 4개소(<도 21>참조), 경찰서 1개소, 공용주차장 1개소 등 총 6개 시설이 있다. 공용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부적시설지에 대한 사실상의 공원 조성이 불가한 실정으로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도 21>태화동 울산어린이집

- 당초 어린이공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현행법상 시설 설치가 불가한 어린이집이 위치

3) 어린이공원 관리에 따른 문제점

울산광역시중구 관내 어린이 공원은 총 55개소 120,561.3㎡ 중 조성 완료된 곳이 34개소 59,069.3㎡, 조성중인 곳이 17개소 38,670㎡, 미조성인 곳이 4개소 22,822㎡가 있다. 관내 어린이공원이 모두 완공되어 시공주체로부터 행정청인 구로 이관될 경우 산재한 공원을 차량을 이용하여 순찰만 하더라도 일일근무

시간이 소요된다. 어린이공원의 특성상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어 행정청의 효율적이고 즉시적인 시설물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어린이공원에 있어서 공원관리의 절반은 화장실 관리이며 공원내 타 시설과 비교할 때 많은 인력의 소모를 가져오며 공원의 질적인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광역시중구 관내 별도의 화장실이 있는 어린이공원은 10개소가 있으며 신설하는 어린이공원에는 원칙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시공 주체와 협의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공원 이용자중 150m이내가 전체 이용자의 69%, 300m이하의 경우 87%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 화장실 이용 필요성이 적으며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행정청으로 화장실 설치를 건의한 곳은 한곳도 없다.

참고적으로 공원이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37.5%가 “청결하지 않다.”는 이유이며, 26.5%가 “집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이며, “불안감이 생겨 이용하기가 꺼려진다.”가 23.6%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용자 주인의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중 소규모로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으나 많은 관리인력을 필요로 하거나 별도의 관리용 건축물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울산광역시중구에서는 효율적인 공원관리 방안으로 3월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시행과 병행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공원내 휴지통을 제거 및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시행하였다. 시행 후 8개월이 지난 다음 불편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많이 불편하다.’ 30%, ‘조금 불편하다.’ 36%, ‘불편함을 못 느낀다.’ 22%, ‘별로 사용할 일이 없다.’로 나타났다. 시행초기보다 민원 발생이 줄고 공원내 쓰레기 방치 및 가정 쓰레기를 불법투기가 많이 줄었으나 공원 이용자들의 의식은 적극적인 참여가 아닌 제3자적인 자세이다.

4) 설계자 의식 부족에 따른 이용자 시설 미완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의 부모를 제외하고 많은 어른들에게 놀이터는 만족을 얻는 곳이 될 수 있다. 어린이들의 놀이는 끝없이 매력을 끄는 것이며 우리들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노인들은 특히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구경하기 좋아하며(<도 22>참조), 어른들이 아이들만큼이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새로운 놀이시설의 위치를 선정할 때 설계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며,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관찰공간이 아닌 어른들을 위한 편의적인 시설이 별도로 배려되어야 한다.



<도 22> 다운동 삼성아파트 뒤 어린이공원

- 한 노인이 손자의 놀이를 지켜보는 장면

5) 조경수 식재에 따른 문제점

도시공원에 있어서 상록수와 낙엽수의 비율이 6 : 4가 적당하나 현재 식재 비율을 살펴보면 53 : 47로서 상록수와 낙엽수의 식재율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며 이 또한 관목류의 식재 비율이 높아 6 : 4율에 의한 상록과 낙엽의 바람직한 식재 구성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수종별로 살펴보면 상록수의 경우 해송이 대부분으로 수종이 한정되어

있으며 일부 히말라야시다의 경우 시설규모 1,500㎡ 기준의 어린이공원의 조경수로는 수관이 넓고 뿌리가 천근성으로 도복이 잦아 어린이 공원 식재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식재 패턴에 있어서도 <도 23>과 같이 대부분 공원의외곽지에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공원 외부 경관과 차폐되도록 하였고 가운데 중심공간을 동적 공간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단순·이원화하였다.



<도 23> 다운동 시영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 공원 외곽지를 수벽으로 쌓이도록 함
- 웬스와 수벽의 이중벽 설치로 옆 도로가 차량의 통행이 없는 주택지 입에도 차폐

6) 어린이공원 소재 위치별 문제점

어린이공원의 설치 장소가 택지 조성지내 토지의 효용이 열악한 산간변, 경사지, 녹지와 연결한곳에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실제적인 공원 이용이 한정되고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성이 완료된 어린이공원 34개소 중 강, 자연지형지물 및 산간변과 연결한 어린이공원이 5개소, 시설녹지 및 근린공원과 연결한 공원이 6개소 주택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이 1개소로 실제 미조성된 곳을 제외하면 40%가 공원 시설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공원의 특성상 근린권에 위치하여 보호자 없이 놀이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2면 이상이 차도와 접한 공원이 29개소로 차량 통행에 민감하지 못한 어린이에게 위험은 항상 상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어린이공원 입지별 현황

구 분	차도와 접합		
	1면 이상 차도와 접합	2면 이상 차도와 접합	3면 이상 차도와 접합
개 소 수	5개소	9개소	20개소

(cont'd)

구 분	근린공원 및 녹지와 연접한 공원	산간변과 접한 공원	주택지와 동떨어진 공원
개 소 수	6개소	5개소	1개소

2. 제언 및 개선방안

1)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개선방안

어린이공원 조성시 조성계획의 수립은 기본적인 설계기준의 바탕 아래서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서 조성되어야 한다. 교통이 혼잡한 도로주변이 아니어야 하고 유치거리가 적당하며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가 적합하다.

또한 자연환경이나 인분사회환경의 분석으로 통한 토지의 효용을 높이고 동적 공간과 정적공간의 구분이 명확하여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놀이용 구조물 공간과 조경이 된 일반적인 놀이공간, 모래밭 또는 기타 행위가 일어나는 광

장 등 계획공간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배치에 있어서도 미끄럼틀은 북향, 그네는 태양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토지의 획일적인 평면적 정지작업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어린이공원은 자연환경이나 도시구성에 있어서 일부분으로 종합적인 경관 구성에도 기여를 하여야 한다. 보다 질 높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인가시 도시공원의 설치는 도시공원심의회 등을 통한 조경 전문가의 참여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법제화하여야 하며

둘째,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도시공원 조성시 조성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사업 시행은 자치단체가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행하는 방법으로 관련법 개정 또는 조건 허가토록 하며

셋째, 지역별, 설치개소별 특성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설면적 중 일정 면적을 도시공원 시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도시공원-특히 어린이공원의 위치결정에 있어서 공원의 위치를 도심의 변두리에 위치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부적인 존재가 아니며 생활 속에서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듯 공원이야말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우선 되어져야 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입지 선정에 있어서 특히 어린이공원은 도심의 중앙 또는 지구별 적정 배치하여 전체가 이용하고 참여 할 수 있는 접근성, 생활속의 영역으로 또다른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안전성과 쾌적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갖춘 공간이 되어져야 한다.

2) 어린이공원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제고

도시공원 중 특히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시설 유보지로 생각하는 일선 기관

장이 많다.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 이후 늘어나는 도시계획시설의 수요와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늘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도시공원은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성되어야 하고 추가 시설물의 설치 또한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 조경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공원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공원 점용 허가에 따른 공원녹지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 가능 시설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점용을 하여야 할 경우는 근린 이용권내 대체 녹지공간 확충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주인의식 갖기

어린이공원은 우리나라 전역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그 지역의 특성과 향토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표현 할 수 있는 곳이다. 반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의식은 적극적인 참여가 아닌 방청객의 자세이다. 궁극적으로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어린이공원을 가꾸어 옛 시골 정자수가 자리하고 기억의 향수가 묻어 나오는 마을마당으로 자리하여야 한다. 일련의 과정으로 어린이공원의 고유명칭 갖기야말로 지역민의 애향심 고취와 소속감을 갖게 하고 대내외적인 마을의 상징으로 자리하게 한은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4) 공원시설 및 부적시설지 공원조성

현재 어린이공원내 공원시설은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시공주체에 따라 대부분 동일한 시설물을 획일적인 설치해 놓았다. 현행법상 공원시설이 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시설물의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공원시설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징적인 시설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어린이공원의 형태도 유아공원, 유년공

원, 소년공원, 모험적 놀이터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의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공원내 기 설치된 부적시설에 대하여는 부적시설의 이적을 원칙으로 하되 제반 여건상 이적이 불가할 경우 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 및 조성비를 부적시설 소관 부서가 부담토록 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으로 어린이공원 대상지를 재지정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5)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및 휴지통 철거

어린이공원내 휴지통 철거는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에 따른 정부 방침과 함께 반상회 및 각종 집회 등을 통하여 “쓰레기 되가져오기”운동의 일환으로 지속 홍보하고 공원내 화장실은 신설하는 어린이공원 및 재 조성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공원은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시행초기 다소의 주민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공원관리에 대한 자발적 문제 의식을 부각시키고 책임의식을 갖도록 꾸준한 의식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V. 결 론

오늘날 도시공간에 있어서 녹지 및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환경문제 및 주민의 여가공간 확보 욕구에 부응하여 실로 그 중요성이 크다.

울산광역시에서 중구를 중심으로 어린이공원 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어린이공원의 조성 주체별, 시설물 현황별, 공원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상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며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 어린이공원은 총 273개소 560,006.5㎡이고, 중구의 어린이공원은 55개소 120,561.3㎡로서 21.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구 어린이공원 중 조성이 완료된 곳은 34개소 59,069.3㎡이고, 조성중이 17개소 38,670㎡이며, 미조성이 4개소 22,822㎡이다.

첫째, 조성 주체별로 살펴보면,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중인 공원인 51개소로 이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조성한 곳이 35개소이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조성한 곳이 12개소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성한 곳이 4개소이다. 조성 완료된 어린이공원 34개소 중 공원조성이 미비하여 재 조성한 곳이 10개소이며, 금후 재 조성하여야 할 곳이 7개소이다. 이중 구획정리조합 시행분이 13개소,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시행분이 2개소, 토지개발공사 시행분이 2개소로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및 구획정리조합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조성은 극히 미비하게 나타났다. 어린이공원은 조성 주체에 따라 공원의 질적 수준이 차이가 많으며 또한 시설물의 종류 및 시공 유형이 거의 동일하다. 이는 시공자의 책임의식도 문제지만 도시공원심의회 개최, 공사비 예탁제도 마련 등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근원적인 해결을 하여야 한다.

둘째, 공원시설 현황별로 살펴보면 설치주체별 획일적이고 지역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시설 설치가 어린이 전용시설에 국한되어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우며 이는 어린이의 창의력 저하를 가져온다. 공원 시설물 또한 시설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조성되어져 있으며 어린이공원을 다른 도시계획시설 유보지쯤으로 생각하는 사고는 분명하게 바뀌어져야 한다.

셋째, 공원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화장실의 관리가 공원관리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화장실은 어린이공원 이용객의 87%가 300m 이내 근린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관행적인 화장실의 설치의 사라져야 한다. 행정 편의주의, 관리자 중심에서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이용자 위주, 이용자 중심의 관리체제로 변화되어져야 한다.

가장 훌륭한 선생은 상상력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어린이공원은 일상생활 속의 여느 공간과는 달리 섬세하고 충분히 합리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장으로 자리해야하며 또한 근린권에 위치하여 주민을 위한 마을마당으로 함께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간의 일방적 하향식 관계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문제의식을 부각시켜야 하며 이를 보완하는 각종 제도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는 시설위주에서 서비스 위주로,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위주로, 획일적이기 보다는 국지적 측면에서 지역 특성을 충분히 살린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김동찬, 도시공원내 휴식공간의 선호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7.
2. 김용수·한명구, 유아공원 계획의 기초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 13, No.1, 1985.
3. 김홍규·노정실·고원용, 공동주택단지·어린이놀이기구의 설계의도와 이용행태와의 차이점, 한국조경학회지 조경연구, 1997.
4. 대한국토계획학회, 도시계획편람, 영지문화사, 1985.
5. 신상섭, 전주시 국민학교내 놀이기구 위험인자에 관한 기초 연구, 우석대학교 논문집 제 15집, 1993.
6. 신상섭, 주거단지내 어린이놀이터의 조경설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부설 조경계획연구소 논문집, 1997.
7. 신진만, 어린이놀이기구, 태림문화사, 1996.
8. 신충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9. 심경구의 16인, 조경관리학, 문운당, 1990.
10. 안봉원의 6인, 조경계획론, 문운당, 1986.
11. 여환주, 대도시 어린이공원 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1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도시녹화 마스트플랜 종합 보고서, 1997.
13. 윤국병, 조경배식학, 일조각, 1984.
14. 윤정섭, 도시계획, 문운당, 1988.
15. 이춘홍, 놀이환경에 대한 어린이들의 환경자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1981.

16. 임승빈, 조경계획 · 설계론, 보성문화사, 1984.
17. 정재옥, 어린이공원의 이용형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8. 최현상, 어린이공원 이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9. 한국토지개발공사, 신도시의 조경설계 (공원과 도로조경을 중심으로), 1987.
20. 황정식, 어린이놀이터 놀이 시설물에 관한 연구, 부산산업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21. 황준규, 울산시 도시공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22. 황채수, 도시 · 농촌 어린이의 놀이와 놀이공간의 실태 및 유형에 관하여, 경북대학교대학원 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23. 日本 住宅・都市整備工團 研究學園 都市開發局, 新都市の 道路と 公園, 1995.
24. Michael Hough, 도시경관 · 생태론, 기문당, 1988.
25. Richard Dattner, Design for Play, London, M.I.T press, 1974.
26. Richard Dattner, 어린이 놀이환경 디자인, 기문당, 1993.

부 록

부 록

어린이공원 시설물 선호도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의 시설물 이용 선호도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입니다. 본 조사의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실시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이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후 어린이공원의 조성 및 관리 등의 학술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경주대학교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장태훈

지도교수 최재영

1998년 11월

※ 다음은 귀하의 신상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 ① 5세~10세 ② 10세~20세 ③ 20세~30세
④ 30세~40세 ⑤ 40세~50세 ⑥ 60세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 ① 초등학생 ② 중·고등학생 ③ 주부
④ 개인사업 ⑤ 기타()

4. 귀하의 집은 공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 ① 30m이내 ② 50m이내 ③ 100m이내
④ 150m이내 ⑤ 200m이내 ⑥ 250m이내
⑦ 300m이내 ⑧ 기 타()

※ 다음은 어린이공원 조성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5. 어린이공원을 찾게된 동기는?

- ① 여기에 오면 재미있는 놀이 시설이 있다.
② 친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온다.
③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로서 찾는다.
④ 집 가까이에 있어서 잠깐 쉼터고 들른다.
⑤ 기 타()

6. 본 공원 내 시설물에 관해서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한다. ② 타 공원에 비해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⑥ 관심 없다.

7. 불만족하다면 그 이유는?

- ① 시설물이 단순하다. ② 재미가 없다.
③ 파손되어 이용할 수 없다. ④ 기 타()

8. 본 공원에 꼭 있으면 하는 시설물은?

()안에 시설물 이름을 적어 주세요.

- ① 놀이시설물()
- ② 운동시설()
- ③ 편익시설()
- ④ 조경시설()
- ⑤ 기 타()

9. 본 공원을 이용하는 빈도는?

- ① 주 5일 이상 ② 주 3회 이상 ③ 주 1회 이상
- ④ 월 1회 이상 ⑤ 기 타()

10. 공원에 와서 주로 무엇(무슨 놀이)을 하십니까?

- ① 그냥 쉼다. ② 친구들과 놀이를 하면서 논다.
- ③ 잔디밭 또는 모래사장에서 논다. ④ 놀이기구를 이용해서 논다.
- ⑤ 기 타()

※다음은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1.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1일1회 이상 ② 주2~3회 정도
- ③ 월 1회 ④ 사용하지 않는다.

12.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 ① 집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한다.
- ② 화장실 구조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다.
- ③ 청결에 문제가 있어서 가기가 싫다.
- ④ 왠지 불안감이 생겨 이용하기가 꺼려진다.

※ 다음은 어린이공원 관리에 필요한 참고 사항입니다.

13. 어린이공원의 청소는 주에 몇 번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① 매일청소 ② 주에 3회(격일) ③ 주 1회
- ④ 2주에 1회 ⑤ 월 1번

14. 어린이공원이 청결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 ① 관리원이 청소를 하지 않는다.
- ② 어린이가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린다.
- ③ 공원 내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이다.
- ④ 주민들이 가정 쓰레기를 공원 내 불법 투기하기 때문이다.

15. 공원의 청결을 위하여 누가 청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 ① 공원 관리원 ② 인근주민 ③ 구청 또는 동사무소
④공원 이용객 ⑤ 각종사회단체 또는 인근 초등학교

※ 울산광역시 중구에서는 쓰레기 되가져오기 일환으로 어린이공원 내 휴지통을 없애고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6. 휴지통이 없어서 불편하십니까?

- ① 많이 불편하다. ② 조금 불편하다.
③ 불편함을 못 느낀다. ④ 별로 사용할 일이 없다.

17. 어린이공원에 휴지통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 ① 휴지통이 있어야 무단 투기가 없다.
- ② 공원에는 이용객 서비스를 위하여 휴지통이 있어야 한다.
- ③ 공원이므로 편의시설물로 휴지통이 꼭 있어야 한다.
- ④ 공원의 청결을 위하여 휴지통이 있어야 한다.

18. 놀이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한다. ② 비교적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하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좋은 편이다.
⑤ 매우 불만족하다.

19. 불만족하다면 그 이유는?

- ① 시설물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가 없다.
- ② 시설물 노후되어 시설물 이용시 위험하다.
- ③ 오래된 시설물로서 유행에 뒤떨어진다.
- ④ 도색상태가 불량하고 시설물이 조잡하다.

ABSTRACT

A Study on the Situation and Improvement of Children Parks In Ulsan Great Sphere City

– The case of Jung-gu –

Jang, Tae-Hu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pecial Study of Development Resources & Environment Ecology

The Graduate School, Kyongju University

Directed by Choi, Jai - Young, Ph. D

Introduction

Today the green field and the city park in urban space , as the facilities for city planning, are very important to get an answer to environmental problem and meet the resident's wishes in ensuring leisure space. This analyzes children park facilities focusing on the central district(Jung-gu) in Ulsan and brings up problems in the aspects of the subject for the construction of children park, of the present condition of facilities and of the management of park. And This analyzes the programs for the improvement. The summary of the studies is as follows.

Main Subject

Ulsan has 273 parks for children and the total area is 560,006.5m². The central district has 55 parks and the total area is 120,561.3m² and it occupies up to 21.5 %. In the central district the number of parks having been constructed is 34 and the total area is 59,069.3m², constructing now is 17 and the total area is 38,670 m²,

not constructing is 4 and the total area is 22,822m².

First, in the subject of construction 51 parks has already constructed or are constructing now. Of these, 35 parks are by a land adjustment work, 12 parks are by the law of land for housing development, 4 parks are by the law of city planning. 10 of 34 parks having been constructed were renovated for the imperfection and 7 parks should be renewed henceforward. Of these, 13 parks are up to the land adjustment work union, 2 parks are up to the project of land for housing, 2 parks are up to Korea Land Development Corporation. The construction of children parks by the project of land for housing and the land adjustment work union, is very incomplete. According to the subject of children park construction the park level in quality is diverse but the kind of facilities and the style of construction are almost alike. This is attributed to the constructor's sense of responsibility but the programs holding a city park council, preparing the cost of construction depositing system should be supported institutionally to get a fundamental settlement.

Second, the present condition of park facilities is uniform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not considered at all. The arrangement of various facilities is difficult because it is confined to the facilities for children according to the law now in force, so this brings the low creative-power of the children. Park facilities are constructed uniformly no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It should be changed apparently to think children park as the reservation for other facility of city plan.

Third, in the aspect of the management of park, as the above mentioned, it is not exaggerated that the management of toilets is an half of the management of park. The customary arrangement of toilets should disappear, for they doesn't have to be provided necessarily thinking that 87% of the visitors is within 300m from each toilet. The system of management should be changed not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the manager but for the visitors of park.

It is usually said that the best teacher is the power of imagination. Children park, different from other space in daily life, should be situated as a pleasure resort for children, which should be sensitive and reasonable enough to give new experiences and should be close to a residential area to be a place for the resident.

To overcome the limits the one-sided relationship bending downward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resident should be broken. It is thought that the resident should have a critical mind voluntarily for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 and various systems to supply this should be supported.

Henceforth children park should be constructed, which give the first consideration to services than facilities, visitors than providers and the most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made not uniformly but locally.